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시설 및 주의사항

□ **입주가능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 **산업시설**

- ①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34) * 도시형공장에 한함
- ② (지식산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명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 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921 측량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22 제도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24 지도 제작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광고물 작성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전문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교육 서비스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2.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경영컨설팅업	71531	경영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76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광고대행업	71310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 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이러닝 산업(이러닝사업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7호(출판업), 10호(교육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③ (정보·통신산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전기 통신업	61210	유선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④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설업 제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
- ※ 지식산업센터 입주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또는 임대 모집공고 등 확인 필요
- ※ 환경 등 개별 법규, 관리 규약 등으로 제한되는 시설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음

○ 지원시설 :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시행령 제36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을 하기 위한 시설 -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근린생활시설(제한면적 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 - 문화 및 집회시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운동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보육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이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해당 상점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

□ 입주자의 의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

- ①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 * 주요 구조부 :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 보·바닥·지붕
- ②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③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
- ④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 의무 위반 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